

2017년도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문제 변경 현황

굴삭기운전기능사 과제 변경 내역

□ 요구사항과 수험자유의사항의 수정내용 중 단순 맞춤법이나 문장순화를 위한 변경내용은 기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요구사항 : 도면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선의 명칭 추가 및 수정
2. 수험자 유의사항
 - 공통 항목 추가
 - 감점 항목 삭제 : 배점 사항으로 변경(수행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)
 - 실격 항목 수정 : 도면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
3.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 : 복장 기준 명확화

1. 요구사항

번호	항목	시험문제 (요구사항)		
	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.	코스운전			[추가]주차구역선
2.	굴착작업			[추가]가상굴착제한선 [변경]굴착제한선 → 굴착구역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굴착을 위해 적절한 rpm으로 조절하여 작업을 합니다. ○ 덤프 지점의 흙을 고르게 평탄하여야 합니다. 	(추가)	

2. 수험자 유의사항

번호	항목	시험문제 (수험자유의사항)															
		변 경 전		변 경 후													
1	공통			<p>가. 공통</p> <p>3) 규정된 작업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.(수험자 지침공구 목록 참고)</p> <p>4) 휴대폰 및 시계류(손목시계, 스톱워치 등)는 시험시작 전 시험위원에게 제출합니다.</p> <p>7) 수험자는 굴착지역의 흙이 기준면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시험위원에게 흙량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굴착지역의 기준면은 지면에서 하향 50cm)</p>													
2.	감점사항	<p>라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.</p> <p>1) 코스 운전 전진 시, 운전석쪽(좌측) 앞바퀴가 정지선 안에 정착하지 못한 경우 (5점 감점)</p> <p>2) 코스 운전 후진 시, 어느 한 바퀴가 종료선을 통과한 후 네 바퀴 중 한 바퀴가 주차선을 터치하는 경우 (최대 10점 감점 : 한 바퀴 5점, 두 바퀴 이상 10점, 다수의 터치 10점)</p> <p>3) 작업복장(작업화, 작업복) 미착용의 경우 (두가지 중 하나라도 미착용 시 10점 감점)</p> <p>4) 과제 시작 전,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(코스와 작업 두 과제 중, 한 과제 또는 두 과제 미착용 시 10점 감점)</p>		<p>○ 감점 사항 삭제</p> <p>배점 사항으로 변경(수행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)</p> <p>예시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변경전(감점처리)</th> <th colspan="2">변경후(배점처리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안전복장 착용</td> <td>안전복장 미착용</td> <td>안전복장 착용</td> <td>안전복장 미착용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- 10 점</td> <td>해당점수 부여</td> <td>0 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변경전(감점처리)		변경후(배점처리)		안전복장 착용	안전복장 미착용	안전복장 착용	안전복장 미착용	-	- 10 점	해당점수 부여	0 점
변경전(감점처리)		변경후(배점처리)															
안전복장 착용	안전복장 미착용	안전복장 착용	안전복장 미착용														
-	- 10 점	해당점수 부여	0 점														
3.	실격사항	<p>마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합니다.</p> <p>9) 버킷, 암, 붐 등이 폴(pole), 줄, 제한선 등을 건드리는 경우</p> <p>10) 버킷 투스가 굴착제한선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 (굴착, 덤프, 평탄 시)</p>		<p>나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합니다.</p> <p>7) 뒷바퀴가 도착선을 통과하지 않고 후진 주행하여 돌아가는 경우</p> <p>10) 버킷, 암, 붐 등이 폴(pole), 줄을 건드리거나 오버스윙제한선을 넘어가는 경우</p> <p>11) 버킷 투스가 굴착구역선 및 가상굴착제한선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(굴착, 덤프, 평탄 시)</p>													

3.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

수험자지참공구목록		
변 경 전	변 경 후	비고
※ 작업복장 기준 작업복 - 반팔, 반바지, 치마를 제외한 작업이 가능한 일반적인 복장 작업화 - 안전화 및 운동화만 해당	※ 작업복장 기준 작업복 -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소매 상의(팔तो시 허용)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바지 하의 (반바지, 7부 바지, 찢어진 청바지, 치마 등 허용 안 됨) 작업화 - 안전화 및 운동화 (샌들, 슬리퍼, 굽 높은 신발(하이힐) 등 허용 안 됨)	